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9.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6. 2. 양부남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6. 7. 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(26. 8. 24.)

제43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8. 26.)
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(2026. 9. 1.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양부남의원)

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,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적 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.

그러나 현행 「지방자치법」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이 하위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, 일부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
또한,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미비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아울러,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인 ‘5극 3특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·시도사무 이양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,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이 요구됨.

이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,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며,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,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장지원)

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

4. 대체토론 요지

없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이해식위원)

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